

대전지방법원 2020. 4. 9 선고 2020가합8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4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6. 1. 20. 접수 제 81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6. 11. 8.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재판장판사이종록

판사문지연

판사이원진

별지